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지침

제 정 2025.10.01.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지침

제 1 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 법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그리고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하여 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기본원칙

제2조(투자자이익 우선의 원칙) ①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이해상충의 관리 절차

제4조(이해상충문제의 파악·평가·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규와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서면, 우편

2.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모사전송, 메신저 등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투자제안서, 핵심상품설명서 등 마케팅 자료에 적절한 기재하는 방법

4. 그 밖에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절(거래제한 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또는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4편 제2장(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3절(정보차단벽) 제3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 감시 등)을 참고하여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①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회사 및 그 밖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회사의 고유재산운용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간의 이해상충
 - 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 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 라. 회사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투자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2. 회사가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의 이해상충
3. 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등)로 인한 이해상충
 -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 가. 투자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 나. 투자운용인력 등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 다. 다른 투자자와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 라. 그 밖에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달리 정하는 이해상충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그 외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조치(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그 이해상충이 발행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수행)를 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이해상충 대응방안
회사 고객과 대주주 계열회사간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총칭하여 “대주주등”)가 관여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건설업, 건설용역업,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부	- 대주주등이 관여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참여 금지 - 단, (i) 관련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ii) 일

	<p>동산 관련 서비스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p>	<p>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유리한 거래에 한하여, (iii)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거쳐, (iv)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결의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i),(ii)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법률의견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함)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이사회 안건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대주주등이 관여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신용공여 방식(사업자금 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으로는 - 어떠한 경우에도 위 예외의 적용 없이 원천 금지)
	<p>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주주등이 투자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정보교류 금지 대상 정보의 교류 차단(법령, 감사, 준법감시/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 처리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예외적 교류 가능) - 정보교류 차단의 조치를 통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 금지
	<p>대주주 등이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
	<p>대주주등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적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

	<p>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행위</p> <p>집합투자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의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 -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으로서, 관련 법규 및 본 기준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거래는 예외적 허용 -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p>계열회사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5조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거래 금지
	<p>대주주등과 사무공간·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공유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별도의 출입문 설치 - 전산자료가 독립하여 열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
	<p>대주주, 계열회사와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등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기록·유지의 적정성을 확인

③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 및 임직원은 관련 법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회사는 이해상충의 방지 및 업무수행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상품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한 승인, 운용계획서, 투자제안서, 핵심상품설명서 등 마케팅자료를 검토할 때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 투자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여부가 적절한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와 임직원은 관계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5조로 정하는 거래
- ② 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방안) ① 임직원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관련 업무수행 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객에게 손해(유·무형)를 끼치면서 회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금전적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 수행 금지 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 고지 또는 회사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손실 회피를 하지 않도록 거래제한 등의 조치 시행
 2.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및 거래의 결과에 대해 회사가 고객의 이익과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

3. 회사가 다른 고객보다 특정고객의 이익을 우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건전 영업행위 해당 여부 사전검토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사전논의 (해당할 경우 거래 금지)
4.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고객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이외에 금전,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이익을 수수하였거나 수수할 예정인 경우 : 고객에게 해당 사실 고지
5.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 있는 경우 : 해당 업무수행 금지
6.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무관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업무수행 금지
7.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사전 논의 후 해당 업무 수행여부 결정

제 4 절 이해상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이해상충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운영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4.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제 5 절 정보교류차단

제10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인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인 경우에는 특정증권을 거래 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다. 단, 정보의 일반대중에 대한 공개성 또는 투자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정보공개 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서 제외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한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해서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 할 수 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외 총액과 증권외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6.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
 -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의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 1)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투자일임재산)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VI.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 1) 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 2) 회사와 투자자, 다른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상충
 - 3) 회사 임직원과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 4)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 5)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2. 대응방안

- 1)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V. 정보교류차단 담당 임원 및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1.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 2.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